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0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김예지·조은희·백종헌

엄태영 · 김장겸 · 김선교

김민석 · 최수진 · 박덕흠

김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권한의 탈중앙화를 통한 지방 자치단체 스스로의 위기 극복 및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발달장 애인 지원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군·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분권을 촉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33조및 제41조).

법률 제 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19649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33조제2항 전단 중 "한다"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 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의 규모 및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을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①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	
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	
여 <u>제33조제2항</u> 에 따른 지역발	제33조제2항 및 제3항
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	
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649호 발달장애인 권리	법률 제19649호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②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	
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	
·도에 설치하여야 <u>한다</u> . <u>이 경</u>	<u>하고,</u> 시장·

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 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 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지원인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제41조(위임·위탁) ① (생 략)

② <u>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u>
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구청장은 지역발달장애 인지원센터를 시・군・구(자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 치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③ 시・도지사는 지역의 규모 및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 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지역발달장애 인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에 필 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u>보건복지부장관</u>,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 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 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 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3) (2) (2) (3) 年 (2)